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잠복황반이상증

성별	남성	나이	27세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2012년 12월 □사업장에 TIG 용접공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1월, 대학병원에서 잠복 황반이상증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작업장 근무 당시에 수행하였던 용접 작업 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상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계속 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로 08시~19시가 정규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 휴식시간은 1일 4회, 10분씩 주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 1주일에 4일 가량 있었고, 주말 특근은 한 달에 4회 정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 1주일에 2일 가량이라고 하였다. TIG 용접 당시 근로자의 업무는 얇은 철판을 녹여서 붙이는 작업으로,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40kg 가량의 가용접된 철판에 포인트 별로 용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CO₂ 용접 당시 근로자의 업무는 용접을 통해 용가재로 철판을 붙이는 작업으로, 근로자는 가용접된 철판을 용접으로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안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2019년 1월, 대학병원 안과 내원하여, 안저검사, 망막전위도촬영(ERG), 형광안저촬영(FFA), 인도시아닌 형광안저촬영(ICG), 안구광학단층촬영(OCT) 시행하였고, 과거의 검사결과와 함께 검토하여 잠복 황반이상증 의증으로 진단 받았다. 상병의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2019년 9월 및 10월 대학병원

안과에 특별진찰 의뢰하였으며 동일하게 잠복 황반이상증 의증으로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과거 2015년 7월, 2016년 6월 각막의 이물로 안과의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나,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만성상악동염, 알레르기비염,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등의 과거력 및 기저질환은 없었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19년 1월 잠복황반이상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2년 12월부터 약 4년 11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잠복 황반 이상증 발병의 직업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용접광에 의해 흔히 발생하기 쉬운 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용접이 상병의 진행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